선은 공단기

모든 공무원 행정학 대비
고득점에 필수적인 행정학 법령 총정리

2027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



KASPA KIPA PUBLIC ADMINISTRATION ACADEMY 공단기

2027 이공이칠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을 펴내며

최근 10여년간 공무원행정학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실력”과 “출제위원의 출제기술”이 상호인과성을 띠면서 서로 공진화(co-evolution)하여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7급의 경우 PSAT 도입이후 이미 행정학이 2차과목 중 주요 과목이 되었고, 9급의 경우도 필수과목 전환이후 행정학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행정학 실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출제위원들 또한 여러분들의 향상된 실력을 의식하여 난이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행정학 난이도가 이처럼 갈수록 높아져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법령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행정학에서 법령문제의 출제비율은 10여년 전에 비하여 무려 2~3배나 높아졌습니다. 10년전 평균 7.5%였던 것이 2025년 평균 29%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2026 국가9급 행정학에서는 무려 5문항(25%), 2024 지방9급에서는 5문항(25%), 2023 국가7급에서는 8문항(32%)이나 출제되어 이러한 문항들이 킬러문제가 되어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령문제는 주로 실무분야에 해당하는 인사행정(「국가공무원법」과 인사관련 대통령령), 재무행정(「국가재정법」 등), 지방자치(「지방자치법」 등) 편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법률의 하위규정인 대통령령에서 까지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9급 시험도 문항 수가 25문항으로 늘어나면서 고난도 실무형 법령문제 출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으므로 내년도 시험에서는 이러한 법령문제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령문제는 틀려도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더 이상 행정학에서 고득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법령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이 출간된 이유입니다.

2027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은 법령문제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행정학과 관련된 80여개 법령을 선행정학 각종 교재 순서에 맞추어 주요 조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총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령조문 나열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개념”과 “강학상(이론상) 개념”이 서로 다른 경우 개념간 괴리로 인한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법령조문 좌우 날개여백에 강학상(이론상) 개념도 함께 표기하여 법령과 이론이 서로 연계되는 입체적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법령조문과 관련된 기출문제들도 함께 수록하여 법령내용과 기출문제간 연결성도 높였습니다. 이번 2027 법령노트 선행정학은 2026 출제경향과 최근 제 · 개정된 법령(「지방자치법」, 「인공지능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을 완벽 반영하여 출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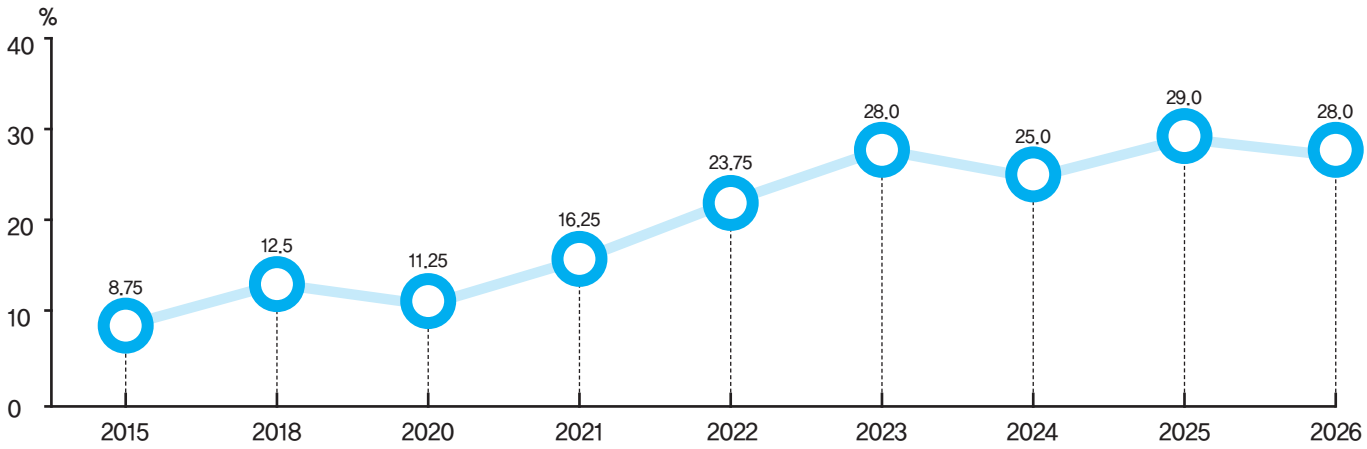
법령을 통하여 행정학 이론은 물론, 기출까지 모두 체크할 수 있는 다목적 입체교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행정학 마무리와 고득점에 큰 도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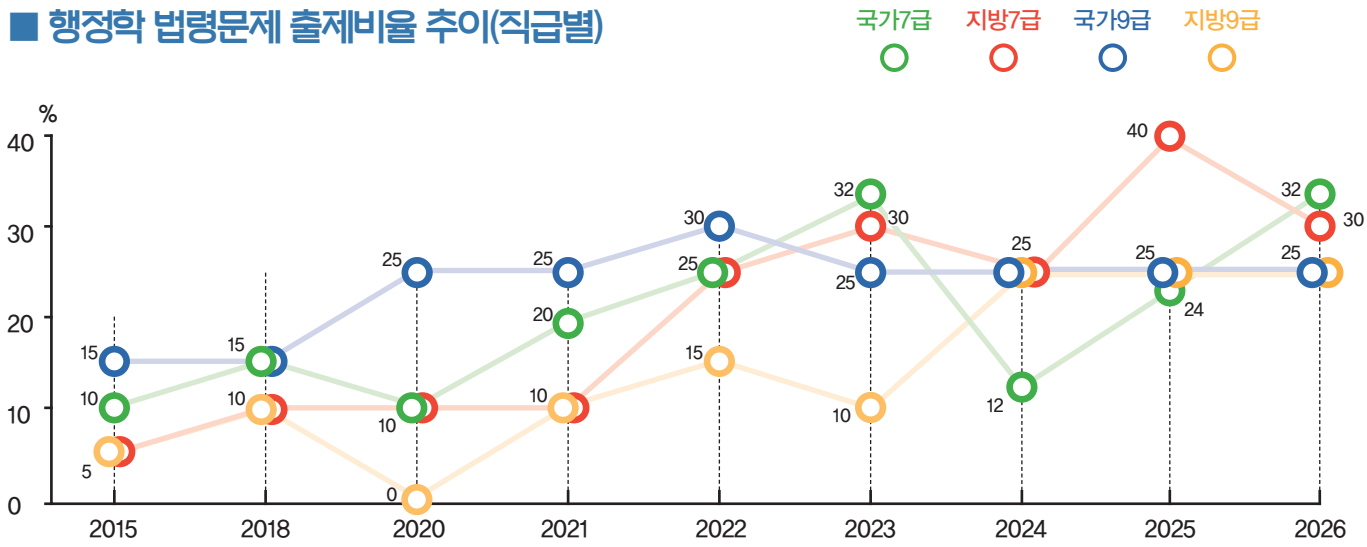
2026.11.25. 카스파 연구실에서

지은이 김중규

■ 행정학 법령문제 출제비율 추이(전체 평균)



■ 행정학 법령문제 출제비율 추이(직급별)



01 대한민국 헌법(헌법) 1948.7. 제정 C

2027 김중규 선행정학 p.585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한다. 1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3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4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 5로 정한다.

■ 제65조

①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1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근거 조문

기출체크1

예산불성립시 헌법규정에 의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로 볼 수 없는 것은? 2017 국회9급 등 총4회

① 공무원 보수
② 명시이월비와 예비비
③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④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②는 해당되지 않음(「헌법」 제54조)

답 ②

2 준예산제도

기출체크2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회8급(수정)

①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국회는 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부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연차적으로 앞당기기로 하였고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는 소관 부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포함된다.
④ 「국회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국회법」 제44조)

① [O] 「국가재정법」 제33조
② [O] 「헌법」 제54조

답 ④

3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5년 이내, 예외적으로 10년 이내, 국회의결로 연장 가능

4 국고채무부담행위

5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 ⇨ 조세법정주의

02 공소청법

2026.10.2. 시행 / 법무부 D

2027 김중규 선행정학 p.395

■ 제1조(목적)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2조(공소청)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둔다. [1]

■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의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다.

■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 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 · 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 · 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6조(공소청의 장 등)

①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②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 제7조(검사사무에 관한 지휘 · 감독)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 · 감독을 받는다.

■ 제9조(법무부장관의 지휘 · 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 감독한다.

■ 제11조(공소청의 장)

①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사사무를 총괄하며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1 검찰청 폐지

과거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의 기능 중 기소(공소)에 관한 기능만 공소청으로 이관하고, 수사에 관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

1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D

■ 제1조(목적)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수립 · 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 ·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 · 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 분석

2027 김중규 선행정학 p.795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D

1949.8. 제정 / 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②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 5 [1]와 같다.

③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과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⑤ 의회사무기구(위원회 포함)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 · 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 · 군 · 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별표 5

2. 전문위원은 일반직으로 하되,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

■ 전문위원 등의 신분과 직급

지방의회	전문위원	일반직(원칙) 별정직(예외)	시 · 도	4급 및 5급 이하
			시 · 군 · 구	5급 및 6급 이하
	정책지원관	일반직	시 · 도	6급 이하
			시 · 군 · 구	7급 이하
국회	수적 전문위원	별정직(1급 상당)		
	전문위원	일반직(2급)		

기출체크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25 국회8급

ㄱ.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ㄴ. 전문위원은 위원회 소속으로 소속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의회사무기구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ㄷ.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모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ㄹ. 시·도의 경우 전문위원은 4급 및 5급 이하의 직급으로 임명하고, 정책지원관은 6급 이하로 임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ㄱ [O]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ㄴ [X] 의회사무기구 소속, 소속위원회사무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지만 그외 일반 사무는 의회사무기구장의 지휘·감독(영 제15조)
ㄷ [X] 정책지원관은 일반직, 전문위원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영 제15조)
ㄹ [O] 영 제15조

답 ②

16 지방공기업법

1969.1. 제정 / 행정안전부 D

■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 · 토지 또는 공용 · 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공공재개발 · 재건축사업
11. 신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사업
12.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 ·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 ·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지방직영기업의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출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기출체크1

다음은 각종 지역사업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사업(당연적용사업)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3 국가9급

ㄱ.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ㄴ. 주민복지 사업
ㄷ. 공업용수도 사업
ㄹ. 공원묘지 사업
ㅁ. 주택 사업
ㅂ. 토지개발 사업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ㄹ, ㅂ

ㄴ [X] 포함되지 않음(법 제2조)
ㄹ [X] 포함되지 않음(법 제2조)

답 ②

기출체크2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5 지방7급

① 주택사업
② 하수도사업
③ 마을상수도사업
④ 자동차운송사업

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법 제2조) 답 ③

2027 김중규 선행정학 p.812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C

■ 제1조(목적)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 에너지 · 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

■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로 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

명칭	관할구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전의 전라남도 일원 및 광주광역시 일원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 제9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 · 군 · 구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는 그 관할구역에 시 · 군 · 구를 둘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 · 군 · 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시 · 군 · 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내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인공지능 · 에너지 · 문화수도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둔다.

■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①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

1.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 제2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 TEL. 02-532-5280
gong.conects.com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7판 2026년 11월 30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B동 601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ISBN 979-11-23149-02-8
값 20,000원